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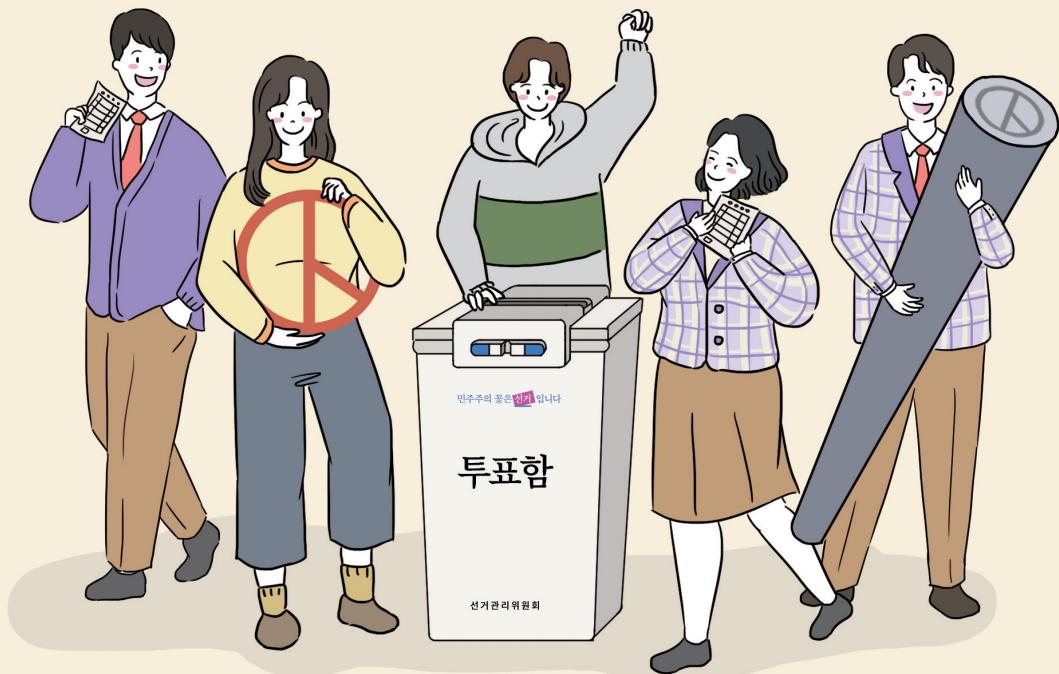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044-200008-14



교사용

만 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만 18세 이상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은 '선거권자'입니다.
선거교육은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본 교재에 나와 있는 선거일정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하였음.

만 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선거교육의 의의

-
- 1. 유권자의 의미 08
 - 2. 선거교육의 중요성 10



선거교육의 기본방향

-
- 1. 정치적 중립성 15
 - 2. 정보의 다양성과 균형성 16
 - 3. 유권자의 참여성 17
 - 4. 선거의 공정성 18

III

선거교육 주요내용

-
- | | |
|----------------|----|
| 1. 선거제도 | 20 |
| 2. 선거정보 습득과 활용 | 24 |
| 3. 유권자의 교양 | 25 |
| 4.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 | 27 |

IV

교사가 알아야 할 선거법

-
- | | |
|---------------------|----|
| 1. 선거권 및 선거운동 연령 기준 | 31 |
| 2. 학생의 선거운동 허용범위 | 33 |
| 3. 교사의 행위 및 활동 | 38 |
- 부록: 관계법조문 43



선거교육의 의의

- | | |
|--------------|----|
| 1. 유권자의 의미 | 08 |
| 2. 선거교육의 중요성 | 10 |

I . 선거교육의 의의



1. 유권자의 의미

유권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즉,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에 해당되지만 각 나라마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선거권 연령에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를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에 대한 기준이나 그 사회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2020년)부터 18세 이상의 국민들이 선거권을 갖도록 선거권 연령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현재 고등학교 학생이라도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된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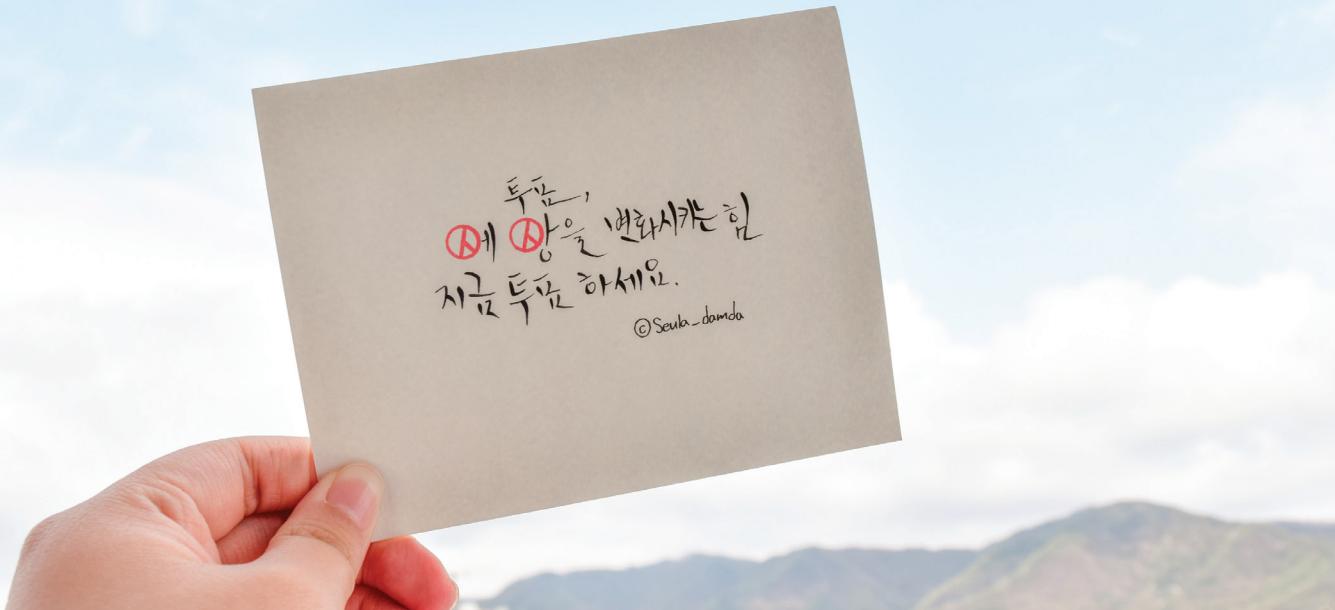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2020년 4월 15일까지 만 18세가 된 사람입니다.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4월 16일 포함)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가 된다는 것을 단지 법적 권리를 갖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권리라는 것은 그 권리 행사의 실효성이 있을 때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지 선거권을 갖는 것보다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 어떻게 하면 선거권을 잘 행사할 수 있을까?
- 선거권의 행사가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 선거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내가 행사한 권리가 무효가 되지는 않을까?
-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유권자가 된다는 것은 국가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권리를 갖는 동시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 또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는 그 만큼의 책임도 동반됩니다. 내 한 표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무런 기준 없이 선택하게 된다면 그 책임 또한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합리적 유권자는 최소한의 자기 생각과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선택이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국가정책과 대표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선거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책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제시하고 선택을 받는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유권자들은 대표 선택을 통해 권력을 위임하고 그들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자질이 부족한 대표들은 교체하거나 낮은 지지율로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권리 행사 수단입니다. 또한 유권자의 선택은 국가의 운영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 또한 매우 큽니다.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가 내세우는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지 법적으로 선거권을 갖는다는 의미를 넘어 그 권리를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때 비로소 진정한 유권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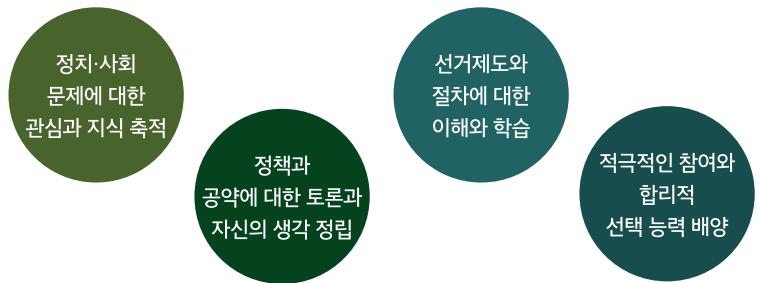
2. 선거교육의 중요성

선거는 후보자 등록-정책과 공약 제시-선거운동-투표-개표-당선인 결정이라는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과정에는 매우 복잡한 요소들이 얹혀있고, 다양한 정치적 이슈들이 개입됩니다. 대표자 선출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유권자들이 똑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선거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념과 정책이라는 것도 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없다면 그 차이를 인식 할 수 없습니다. 투표절차를 잘 모른다면 진지하게 선택하고도 자신의 권리행사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선거 질서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선거의 의미, 선거제도와 정당에 대한 이해, 사회적 이슈와 공약에 대한 관심, 유권자의 태도, 투표와 개표의 절차와 과정 등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교육입니다.

18세 유권자 선거교육은 새내기 유권자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정치적 교양을 쌓는 과정입니다. 선거교육은 정치적 선택을 권하는 선거운동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당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선거 교육은 적극적인 참여와 합리적 선택 능력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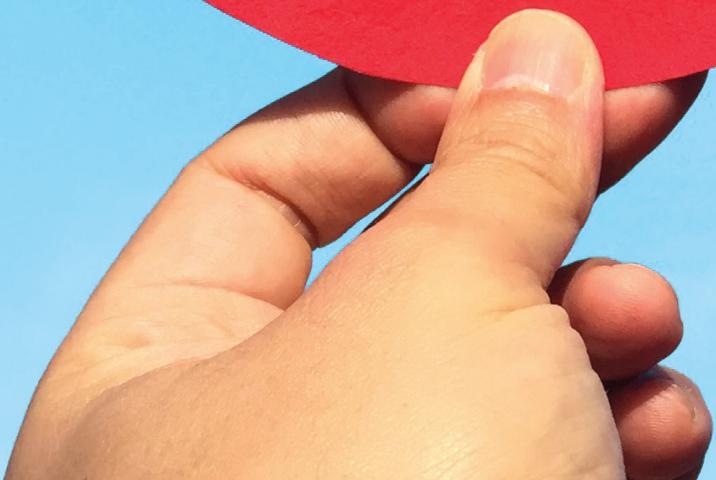
선거교육은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유도하고 자신의 생각 찾기와 당당한 권리 실현을 지향합니다. 선거교육은 자신의 선택이 어떻게 결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함께 논하는 과정입니다. 즉, 선거교육은 유권자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과 체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교육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선거교육의 목표



그러나 새내기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입시라는 제도권 교육의 제약으로 인하여 정치와 선거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도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아무런 준비 없이 법으로 정해진 선거권 연령에 도달하여 선거권을 갖게 된다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준비된 유권자와 준비되지 않은 유권자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권자가 되었는데 대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는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정당이 있는지, 후보자는 어떻게 확정되는지, 어떤 정책이나 공약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면 또 어떨까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무슨 이유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유권자가 투표하는 절차를 모른다면 매우 난감하지 않을까요?

유권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법적 권한만 얻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권리를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학습, 사회와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관심, 정당과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내 가치와 생각의 정립, 권리 행사를 위한 실천 등 갖추어야 할 다양한 교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고하고 행동하는 유권자가 필요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유권자가 필요합니다. 선거교육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선거교육의 기본방향

1. 정치적 중립성	15
2. 정보의 다양성과 균형성	16
3. 유권자의 참여성	17
4. 선거의 공정성	18

II. 선거교육의 기본방향



선거교육은 단순히 선거제도나 절차에 대한 학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 합리적 선택, 그리고 건전한 선거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교육의 영역도 선거제도 일반,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선거운동 등 관련 선거법, 정치참여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면해 있는 실질적인 사회적 이슈나 문제들을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교육은 정치적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선거교육의 기본방향은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치적 교양을 쌓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교육적 지원을 하는 데 본질이 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정당과 후보자 정보 제공에 있어 균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양한 정보와 정보획득 방법들을 제공하여 주체적인 선택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선거법 안내를 통해 유권자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정치적 중립성

선거교육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선거교육의 제1원칙은 유권자에게 특정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을 편향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유권자 스스로의 기준과 판단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내용에 대한 정답을 설정하지 않으며 특정한 정치적 지향을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제도에 대한 학습에 있어서는 그 제도에 대한 특정 정당의 입장은 강조하거나 제도적 효과의 정파적 유·불리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권자가 올바르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와 선거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충실해야 합니다.

특정한 이슈나 가치 그리고 정책에 대한 개인적 선호 또는 평가를 일방적으로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는 대부분의 선거이슈들에 대해 생각의 차 이를 가집니다. 유권자 또한 각자의 생각과 입장을 가질 수 있으며, 가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이나 가치의 주입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선거교육은 특정한 생각이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정립할 수 있도록 어떠한 편견도 없이 사고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교육 담당자는 유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을 지원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중요한 선거교육의 원칙입니다.



2. 정보의 다양성과 균형성

선거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권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선거정보의 습득과 습득한 정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가 무엇인지, 정당과 후보자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선거교육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또한 유권자들이 그러한 정보를 손쉽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교육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자신의 선택 기준을 세우고 정당, 후보자, 정책, 공약에 대한 판단능력을 학습해 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속성은 다양성입니다. 따라서 정보제공에 있어서도 특정 정보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공하는 선거정보 및 정보습득 방법의 객관성과 균형성이 필요합니다. 선거교육의 역할은 유권자들이 다양한 이슈와 관점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함께 토론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당의 한 가지 정책을 설명하게 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다른 정당의 정책도 균형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 특정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 사고의 편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느 정책에 대한 하나의 평가가 있으면 그와 상반되는 평가도 함께 제공하여 양측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는 균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거교육에서 정보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는 것은 유권자가 사고의 폭을 확장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 선택의 방법을 체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유권자의 참여성

선거교육의 목적 중 하나는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를 평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설정에 국민의 생각이 집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참여의 가치와 중요성을 공유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정당과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의 진지함과 이를 위한 적극적인 정보습득 및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선거는 정당과 후보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인공은 유권자입니다. 유권자의 참여 없이는 선거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으며, 선거결과 또한 유권자 선택으로 좌우됩니다. 선거과정에서의 공정성은 정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뜻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유권자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한 선거문화는 유권자가 중심이 될 때 정착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정책과 공약에 관심을 보일 때 선거는 정책경쟁으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불법선거는 근절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때 정당과 후보자는 유권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유권자가 즐겁고 희망찬 선거캠페인을 벌이면 선거는 축제가 됩니다. 이것이 유권자가 선거의 주인공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선거교육은 단순한 선거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유권자의 선거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지 공감하는 동기부여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4. 선거의 공정성

선거의 핵심은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선거는 대표 선출의 정당성을 침해하여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게 됩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 과정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과정에 걸쳐 있습니다. 선거절차가 공정해야 하고, 선거경쟁이 공정해야 합니다. 선거관리가 공정해야 하고 선거참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선거문화는 공정성을 기반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공정이라는 것이 가치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선거라는 현실 속에서는 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선거규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당들이 민주적으로 후보자를 선출하는가?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가? 유권자들의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불법은 없는가? 선거관리 과정은 투명하고 개방적인가? 투·개표과정에서 부정은 없는가? 선거결과는 정확하게 집계되는가? 모두 선거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투표하는 것만이 유권자의 유일한 역할은 아닙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유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당과 후보자의 불법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스스로 선거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법적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선거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선거관리 절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선거교육은 유권자 스스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 선거범죄를 보는 즉시 신고해 주세요.
- 신고·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선거교육 주요내용

1. 선거제도	20
2. 선거정보 습득과 활용	24
3. 유권자의 교양	25
4.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	27

III. 선거교육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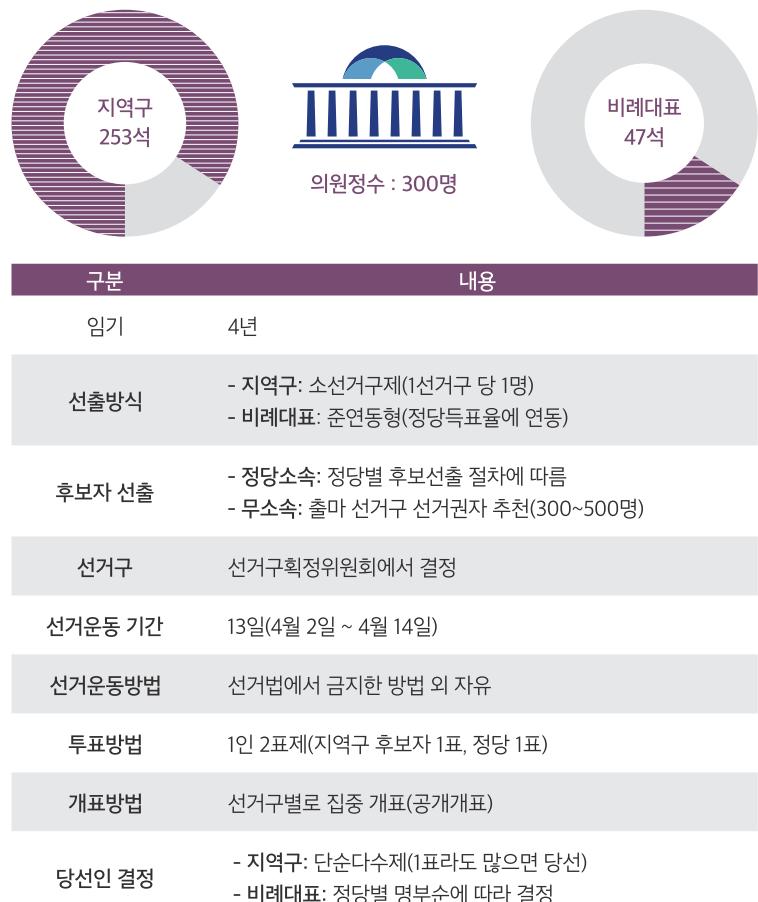


1. 선거제도

선거교육의 기본은 선거제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고,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에 관한 규칙입니다. 따라서 선거제도는 유권자가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대표는 몇 명이나 선출하는지, 임기는 얼마나 되는지, 후보자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선거구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는지, 투표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 개표는 어떻게 하며 당선인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지 등 전반적인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단지 투표라는 행위에 그치고 말 수 있습니다.

선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거과정의 일반적인 흐름은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 개표, 당선인 결정 순으로 이어집니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청에서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데 유권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의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출마하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며,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4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 동안 선거공보, 선거벽보, TV토론, 공개장소 연설·대담, 명함 배부 등의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상시의 경우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선거제도 일반



투표는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해야 하며, 만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4월 10일과 11일, 금요일과 토요일) 신고 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개표는 투표소에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여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합니다. 일반 유권자들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관람증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과정을 직접 참관할 수 있습니다. 개표가 완료되면 지역구의 경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비례대표의 경우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정된 의석수 만큼을 정당의 후보자 명부 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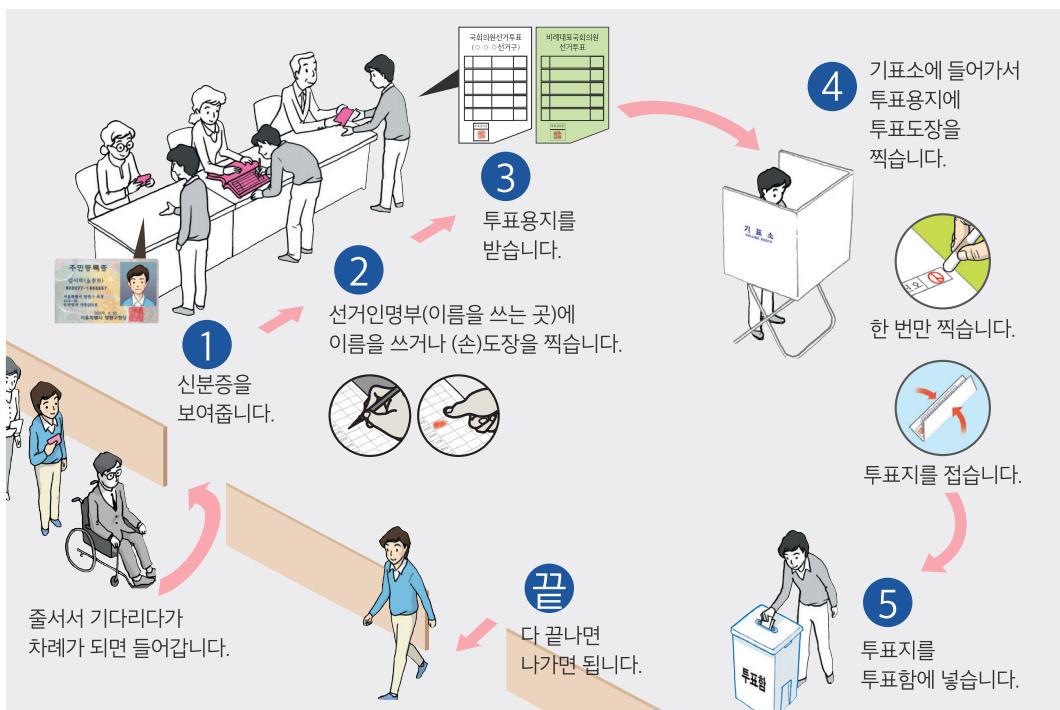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시점은 18세가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고등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그 당시 시점에 18세가 되지 않은 학생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한 번에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보내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시에 발송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선거과정 한눈에 보기



이외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이 선거운동기간과 평상시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으니 선거운동 관련 선거교육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잘 살펴보시고 자신도 모르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입니다. 작은 실수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유권자별로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면 투표할 수 없으며, 투표소에서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허용되는 신분증(사진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등)을 지참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정확히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선거교육 자료에 나와 있는 무효표 사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선거정보 습득과 활용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공약, 자질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선거정보입니다. 그러나 선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새내기 유권자의 경우 선거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확보한 선거정보를 자신의 선택을 위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선거교육에서는 선거정보의 습득과 활용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정보는 각 정당의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책공약알리미와 사이버선거역사관, 정당과 후보자들이 작성하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TV토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적으로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같은 법정 홍보물을 살펴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요 정책이나 공약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는 것도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 방법입니다. 각 정당별 주요 정책이나 각 선거구별 주요 공약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확보한 선거정보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취사선택하여 살펴보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위해서도 투표소, 사전투표소, 투표방법 등 선거정보는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선거절차나 투표방법 등은 이론적 학습보다 체험학습이 더 유용할 수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에 있는 선거체험관을 통해 투표체험 등을 경험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선거정보 알아보기



정당 홈페이지 둘러보기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 검색하기
(<http://policy.nec.go.kr>)



TV토론 시청하기



선거벽보 둘러보기



정당·후보자 선거공보 읽어보기



사이버선거역사관 선거체험

3. 유권자의 교양



선거권을 행사할 때 소중한 권리가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선거교육에서는 유권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교양을 함께 이해하고 공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궁극적인 목적은 유권자의 참여와 실천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진지한 고민을 통해 설정된 자신의 기준에 따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때 그 가치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교양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자세



자신의 생각과 논리에 대한
토론, 주장, 설득 능력



참여와 실천

유권자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한 출발점은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정답일수 없고, 같은 사회문제라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진지하게 청취하는 것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선택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타인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서로의 주장을 함께 논의하면서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거교육 과정에서는 그러한 기회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선거교육에서 사회적 이슈의 도출과 토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참여와 실천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거문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완성이 됩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선거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국민의 생각을 모으고, 선거결과에 대해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 이 모두가 유권자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후보자 정책비교 방법 사례

각 정당별 10대 정책 찾아보기
10대 정책
우선순위 비교하기

후보자 공약 순위 매기기
같은 공약
차이점 찾아보기

관심 공약 친구들과 토론하기
토론 후 공약에 대한
순위 매기기

분야별 10대 공약 찾아보기
내가 원하는 공약 점수
매겨보기

정당정책에 대한
언론 평가 기사
읽어보기

지난 선거에서 나왔던
공약이 반복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4.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



선거문화는 대표를 선출하는 공정한 경쟁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토양이며 그 나라의 선거수준을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선거문화는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이 선거를 대하는 인식과 태도의 문제이며, 그것이 표출되는 행동양식의 축적물입니다. 따라서 선거문화는 선거경쟁에서 선수로 참가하는 정당과 후보자들만의 봄이 아니라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경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유권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경쟁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법에서 정한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 권리행사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생각을 다수의 결정으로 모아내는 것,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현하여 선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 깨끗하게 승복하고 승자에게는 축하를 패자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건전하고 성숙한 선거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과거 선거 역사를 되돌아보면 관권선거와 같은 부정선거가 횡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선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오늘날에는 과거와 같은 선거부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신 시대변화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또 다른 위험요소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미디어를 통한 가짜 뉴스의 확산, 정보왜곡, 거짓사실이나 비방의 확대 재생산입니다.

공정한 경쟁은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지 선거 승리만을 위해 잘못된 정보나 거짓사실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다면 그 선거는 결코 정당하다고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거교육에서는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미디어 발달에 따른 잘못된 정보의 존재와 이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을 경계하는 인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뉴미디어의 경우 매우 보편화되어 있고 그 영향력 또한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활용에 특별한 주의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객관적 정보와 거짓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함께 키워나가야 합니다.

뉴미디어 활용의 부정적 현상



오늘날 선거에서 우려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낮은 투표율입니다.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더 유효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보다 많은 유권자의 생각이 표출되면 대표자들의 정당성도 높아지고 국가운영을 위한 정책결정의 방향성도 더욱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투표참여 문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는 것도 선거교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선거문화는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그 효과가 더욱 큽니다. 불법선거 근절 캠페인, 금권선거 퇴출 운동, 거짓사실 유포 및 비방 추방 캠페인, 생산적인 온라인 토론과 댓글 문화 확산 운동, 투표참여 권리 활성화, 즐겁고 재미있는 선거축제 즐기기 등 건전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권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은 매우 많습니다. 선거교육은 이러한 실천운동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론으로 가득 찬 지겨운 학교수업이 아니라 성숙한 선거문화 창출이라는 뿌듯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함께 만들어 가야합니다.

역대 투표율

단위 : %



IV

교사가 알아야 할 선거법

1. 선거권 및 선거운동 연령 기준	31
2. 학생의 선거운동 허용범위	33
3. 교사의 행위 및 활동	38

IV. 교사가 알아야 할 선거법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학생들도 유권자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 선거를 접하는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유권자가 되는 것이 낯설고 자신들의 행위가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교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성숙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유권자가 된 학생들이 무심결에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잘 안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의도하지 않게 선거에 영향을 미쳐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지 스스로 잘 살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교육이나 학생들의 선거 활동과 관련된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 사안들에 대한 선거법 적용 사례들을 사전에 학습해야 합니다.

1. 선거권 및 선거운동 연령 기준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산정하는 기준을 ‘선거일에 18세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18세 이상의 사람은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4월 16일 출생자 포함)입니다. 선거권이 있으면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 연령 또한 18세입니다. 그 신분이 학생이라도 18세 이상이 되면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연설·대담자, 언론기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운동이 가능한 연령은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는 그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일에 선거권이 있다고 해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18세가 되지 않은 학생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이 언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그 시기를 잘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학급 안에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과 선거권이 없는 18세 미만의 학생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들 간에 이루어지는 선거관련 활동에 대해서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거권 유무와 관계없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권이 없는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을 잘 몰라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한편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이라도 18세 이상이 되면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원가입이 가능한 시점은 18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선거권이 있다고 18세가 되기 전 당원으로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당이나 후보자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후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권, 선거운동 연령 관련 사례

선거운동
할 수 있는 나이 올해 3학년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 「공직선거법」이 바뀌어서 학생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럼 3학년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건가요?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활동 설날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변호사인 삼촌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한 후에 삼촌의 선거운동을 돕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 만 18세인 학생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학교 밖에서 예비후보자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가입·후원금
기부 청소년 권리 향상에 힘쓰는 OO정당을 위해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요?

-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가입 시 만 18세 미만의 학생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학생의 선거운동 허용범위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을 의미하며 이번 선거에서는 4월 2일부터 4월 14일 까지입니다. 예외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즉,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비교적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온라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명함을 배부하고,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게시하며 선거광고와 방송연설을 시작합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중심으로 로고송을 튼 유세차량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처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법정 선거운동기간



친구나 지인을 만나서 직접 투표나 지지를 부탁한다.



집회, 모임에 이르지 않고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지지를 호소한다.



전화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응원을 부탁한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다.

평상시



문자메시지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응원을 부탁한다.



선거와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린다.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SNS를 통해 리트윗, 공유의 방법으로 전달한다.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올린다.

할 수 있는 선거운동

①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선거운동기간 중 가능)

선거운동기간 동안 일반 유권자는 말과 전화를 이용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탁 앞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또한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권유하는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한편, 허용하고 있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라도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② 온라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상시 가능)

온라인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 등에 영상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선거운동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보장됩니다만, 선거 질서 유지를 위하여 선거법에서는 일반유권자가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전단지, 팸플릿, 포스터를 배부 또는 첨부하거나 정당·후보자 배지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학생들이 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야 합니다.

유형이나 행태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후보자 가족 등을 비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함부로 펴나르거나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지지한다고 해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팬클럽 형태의 조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기존 동아리 활동의 일환이라고 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임을 개최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조건이나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금전 등과 같이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의 수위가 높으니 학생들이 특히 유념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사례

말로 하는 선거운동

이번 선거에서 OO후보자를 지지하는데, 반 친구에게 OO후보자를 찍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또한 쉬는 시간을 이용해 교탁 앞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OO후보자를 뽑자고 말할 수 있나요?

- 질문과 같이 선거운동기간(2020년 4월 2일부터 4월 14일) 중에 친구와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 다만, 질문과 같이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뽑자고 말하는 것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중학교때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로 'OO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요?

-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2020년 4월 2일부터 4월 14일) 동안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다른 교실에 가는 행위

평소 OO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같은 반 친구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다른 반도 계속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OO후보자를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 질문과 같이 다른 교실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사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OO후보자의 교육공약이 학교 현실에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OO후보자의 교육공약을 정리해 보내면서 이번 선거때 OO후보자를 찍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낼 생각입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이라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나(선거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문자메시지는 한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넘어서는 안되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유튜브·
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 페이스북에 OO당이나 OO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제가 만든 정당, 후보자 지지 영상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URL을 저희 반 친구들 단체채팅방에 올려서 제 친구들에게 보내도 되는지요?

-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하여 항상(선거일 포함)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할 수 없는 선거운동 관련 사례

인쇄물을 나눠주는 행위

전부터 OO당의 입시정책 공약을 찬성해 왔습니다. OO당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OO당의 입시정책 공약 홍보책자(OO당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를 출력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이번 선거에서 OO당에 투표하자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 정당의 공약홍보물 같이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책자와 같은 인쇄물을 나눠주면서 특정 정당에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수막·배지를 사용하는 행위

OO후보자의 교육정책이 맘에 들어서 ‘교육은 OO후보자에게!’라는 현수막을 만들어 교문 위에 걸고, OO후보자의 이름과 기호○번이 기재된 배지를 만들어 가방에 달고 다니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지요?

- 특정 정당, 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가 기재된 현수막을 걸거나 배지를 달고 다닐 수 없습니다.

거짓사실을 퍼트리는 행위

전부터 OO후보자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OO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OO후보자가 학생들에게 불이익한 공약을 개발해서 공표 하였다고 카카오톡을 통해 제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거짓말이지만 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니 문제없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요?

- 질문과 같이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거짓의 사실을 퍼트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투표해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같은 반 친구가 ‘게임 아이템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신에 선거에서 OO후보자에게 투표 해줘’라고 하는데, 아이템을 받아도 괜찮나요?

- 정당, 후보자를 찍어주는 대가로 게임 아이템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자원봉사자가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후보자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돋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부터 좋아하는 후보자라 열심히 활동했는데, 선거사무장님이 고맙다면서 문화상품권을 주셨습니다. 받아도 되는 건가요?

-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로 문화상품권, 돈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3. 교사의 행위 및 활동

① 학교 내 또는 수업과정에서의 행위

교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또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거권이 없는 18세 미만의 학생들에게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과정이나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선거와 무관하더라도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경우 일 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교사의 말과 행동은 그 경중에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개인적인 주의나 주장을 피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문을 활용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라면 특정 신문의 내용만을 부각하여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신문사는 각각의 편집 방침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특정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을 다룰 때 여러 관점의 기사들을 함께 설명하여 학생들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가 특정 정당에 관한 신문기사, 특정 정당만 눈에 띄는 자료를 나눠주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선호를 드러내어서는 안 됩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정당의 공약을 비교할 때에는 각 정당의 공약을 나란히 소개하고, 다양한 생각이나 비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② 학교 밖 또는 수업과정과 무관한 행위

학교 밖에서도 마찬가집니다. 교사의 영향력은 학교 내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여전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업과정과 무관한 시간과 장소라고 하더라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지지도 조사 및 발표 금지

학생들이 실제 선거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이더라도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8세 이상의 학생에게 투표가 종료되기 이전에 어떤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투표의 비밀보장 원칙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정당 가입 및 후원회 기부 안내 금지

이 밖에도 교사는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학생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가입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학생에게 특정 정당 후원회나 후보자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부방법을 안내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학교 내 수업과정에서의 행위 관련 사례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교원이 특정 학생의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 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 뿐만 아니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 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 조직내에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 질문과 같은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금지됩니다.
- 특히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특정 후보자
공약사항 등 공유**

제가 담임으로 있는 반의 공지사항을 올리는 단체채팅방(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음)에 OO후보자의 공약사항, 선거벽보, 선거공보 파일을 올리면서, 다른 반의 학생들에게도 전달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학생 대상
특정 정당 공약 등
언급**

학생에게 “이번 선거에서 OO당의 교육공약이 좋으니 OO당을 선택해야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한다”고 말해도 되는지요?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
지지 부탁

학생에게 수업시간에 “집에 가서 부모님께 OO후보자는 찍지 말라고 말씀드려라”라고 할 수 있는지요?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

학생 대상
특정 후보자
홍보 부탁

제 친구가 입후보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주위 친구들에게도 좋은 사람이라고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도 되는지요?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후보자의
강연회 등
참석권유

동아리 고문을 맡고 있는 교원입니다. OO후보자가 참 좋은 사람 같은데, 동아리 학생들에게 OO후보자의 강연회·출판기념회 등 행사일정·개최장소가 있는 일정표를 보내고 OO후보자의 공약이 좋은 것이 많으니 주말에 한번 가서 들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도 될런지요?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

지지도 조사 및 발표 관련 사례

- 정당 등
지지도 조사 수업 중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를 할 수 있는지요?
· 교원이 학생들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투표한
정당 조사 이번 선거일인 4월 15일 오후 6시 전에 제가 담임을 맡고있는 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는
반 단체채팅방에서 출구조사 명목으로 각자 투표한 정당·후보자를 표시하라고 할 수 있는
지요?
·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정당 가입 및 후원회 기부 안내 관련 사례

- 당원가입·후원금
기부 권유 등 학생들에게 제가 지지하는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하고,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후원
금을 기부하라고 기부방법을 알려줘도 되는지요?
· 교원이 학생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라고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
하라고 후원금 기부방법을 고지·안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4.15.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투표

4월 15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하세요!

사전투표 4월 10일(금) ~ 11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을 방문하시면
후보자 · 정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거권 연령: 18세(2002.4.16. 이전 출생자) 이상

부록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회의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별 칙>

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255①2)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③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별 칙>

제1항을 위반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255⑤)

제2항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255⑤2)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255⑤9)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별 칙>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255①10)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별 칙>

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255①11)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별 칙>

제1항을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255①17)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오를 자격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연설·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대담·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거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의 임 · 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만 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교사용]**

발행일 2020년 2월
발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전 화 031)296-9831
디자인 (주)프리비 02-2274-1492

